##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8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 임종득 • 권성동 • 유용원

김예지 · 강승규 · 권영진

김정재 • 이양수 • 이상휘

최은석 · 김기웅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 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 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다부처 우주개발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이하 "다부처 우주개발"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부처 우주개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부처 우주개발의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다부처 우주개발의 경우에는 제17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7조의3(다부처 우주개발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이하"다부처 우주개발"이라 한다)을추진할수 있다. ② 다부처 우주개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 현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전형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절차에 따라 추진할수 있다.다만,「국가연구개발혁신법」또는「우주개발 진흥법」에서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표준화,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
	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